

의안번호	2211092
의 퇴 인	김윤의원
회 답 일	2025.07.29.
추계번호	25C35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7억 2,400만원, 2028년 7억 3,8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4억 6,2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 (안 제3조의6)	724	738	0	0	0	1,462	292

자료: 국회예산정 책처

주: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인력 기준 준수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 마련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의6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종류별로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 제1항에 따른 적정 인력 기준을 정할 때에는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인력 1인이 담당하는 환자 유형별 적정 환자 수를 정함. 또한, 교대 근무 인력의 경우 근무조별 실제 근무인력 대비 환자 비율을 기준으로 함(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적정 인력 기준을 준수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기관 지원 및 평가, 보건의료 관련 사업 수행자 선정 등에 있어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함. 이 경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선적 또는 차등적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제3항) ○ 그 밖에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2	안 제33조의3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와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제1항) - 기존 실태조사의 범위에 보건의료인력 적정 인력 기준 준수사항 이행여부 파악을 추가함	의무지출
---	--------------------	---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조의6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	○	○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추계
	안 제33조의3 (실태조사)	×	○ 개정안은 의료기관 실태조사 대상에 '안 제36조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포함하고자 함 - 현행법 제33조의3은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불법 개설기관에 해당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1) 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제3조의6에 따른 의료기관 종류별 보건의료인력의 인력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9.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2	안 제33조의3 (실태조사)	×	○ 현행법은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²⁾, 상급종합병원 지정, 응급의료기관 지정 등을 통해 의료기관 준수사항에 대한 일부 조사와 신고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점검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예시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안전 및 질관리” 사업을 통해 요양병원 의무인증, 조사,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대한 지원, 전문병원 평가위탁,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기준 123억 1,900만원을 배정함 ○ 개정안에 따라 각 준수사항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경우 신규 조사 수행에 따른 비용 발생이 예상되지만, 현시점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조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조직 및 인력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 - 개정안은 실태조사의 시기·방법 및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였으며, 실태조사의 주기, 범위, 위탁 여부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상이할 수 있음 -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준수 여부 점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되는 인력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
---	--------------------	---	--

-
10.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1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12.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13.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14.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 2)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은 의무인증대상)의 인증제도로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조직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 등 4개 영역을 평가하여 인증함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준용하므로, 적정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한 기준 마련 방법, 절차, 횟수 등의 변경 시에는 추가재정소요도 달라질 수 있음³⁾
 - 보건복지부가 적정 인력 기준 마련을 위해 수행한 기초 조사인 ‘보건의료인력 직무 실태조사’를 준용
 -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의 직무 종류와 양, 강도, 소요시간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⁴⁾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
 - － ‘보건의료인력 직무 실태조사’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6월(11개월)까지 건강보험연구원에서 수행하였으며 연구비는 6억 8,200만원 배정
 - 참고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무 실태조사 결과만으로는 적정 인력기준을 마련하기 어려우며 내부 검토나 별도의 연구용역이 필요함. 다만, 추가 연구용역 발주 여부와 연구의 규모는 보건의료인력 직역별로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추계에서는 기초조사 비용만을 고려함
- 안 제3조의6제3항에 따른 적정 인력 기준 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는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계가 어려우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참고로, 현행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는 이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 대해 요양기관 종류별로 연평균 1일 입원 환자(또는 외래환자) 수에 따른 의료인의 정원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현행 정원과 관계없이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의료 질, 근무여건, 환자 유형 등을 고려한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4) 위 6개 직종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빈도가 높은 순서로 선정되었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라 보건의료인력별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함
- 기초연구는 보건의료인력별로 2027년과 2028년 2개년도에 걸쳐서 수행하며, 이외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연구 대상) 적정 인력 기준 마련 대상은 개정안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상 총 20개 보건의료직역⁵⁾ 중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조사를 수행한 6개 직역⁶⁾을 제외한 14개 직역으로 함
 - (연구 기간) 2027년과 2028년에 각각 7개 직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
 - (연구 비용) 기존 보건의료인력 직무 실태조사 연구비를 준용하되, 연구 대상 직역 증가(6개→7개)에 따른 연구비 증액분과 기 개발된 조사 시스템⁷⁾ 개발 비용 절감분을 반영하고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
 - 기존 보건의료인력 직무 실태조사의 예산은 조사 총괄(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예산 5억 5,208만원과 조사 시스템 개발(카이스트)에 대한 예산 1억 2,971만원으로 구분되어 있음
 - 조사 총괄 비용은 기존 6개 직역 조사비를 바탕으로 직역당 단위 조사비를 산출 후, 7개 직역에 비례하여 증액하는 것으로 가정함⁸⁾
 - 보건복지부와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추가 직역 연구에는 조사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해당 예산(1억 2,971만원)은 추가재정소요에서 제외함
- 개정안에 따라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7억 2,400만원, 2028년 7억 3,8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4억 6,200만원으로 추계됨

5)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6) 간호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7) 근무강도 측정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시간대별 이동장소와 체류시간 등을 측정하는 이동 측정앱을 개발함

8) 직역별 조사비는 의료기관 근무 인력 수에 비례하여 정해지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각 직역에 소요되는 단위 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

[표 2]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 연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724	738	0	0	0	1,462	29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임슬기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슬기	02-6788-4740	sg.lim@assembly.go.kr